

첨부1. 해외구매 TV 소비자불만 사례

〈사례1〉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TV의 배송지연 및 사업자 연락두절

김모씨는 구매대행 쇼핑몰 '갯달'을 통해 TV를 구매하고 294만원을 계좌 이체함. 이후 사업자로부터 배송이 2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으나, 2개월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음.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음.

〈사례2〉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TV의 배송지연 및 사업자 연락두절

박모씨는 포털사이트 내 구매대행 '갯달' 카페에서 TV를 구매하고 363만원을 계좌 이체함. 이후 사업자로부터 약 5주 정도의 배송 기간을 안내받았으나, 5주가 지나도 배송정보를 받지 못함.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자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음.

〈사례3〉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TV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박모씨는 국내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TV를 구매하고 약 245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결제 후 2주일이 지나 사업자로부터 제품의 재고가 없어 주문계약을 해제했다는 안내를 받음. 그러나 소비자는 동일 사업자가 같은 제품을 50만원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최초 주문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함.

〈사례4〉 파손된 채로 배송된 해외구매 TV의 구입가 배상 요구

김모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아마존)에서 TV를 구매하고 배송대행을 신청함. 제품이 파손된 채로 배송되어 배송대행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했으나, 사업자는 입고된 상태 그대로 보냈다고 주장함.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상세 포장 등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자가 제대로 포장하지 않고 배송했다며 파손된 TV의 구입가 및 반품비 등의 배상을 요구함.